

위임장

아이엠뱅크 서울영업부 귀중

1. 대리인(차주)

성명		생년월일	
----	--	------	--

2. 위임자(세대주 및 세대원)

순번	세대관계	성명	인감/서명	생년월일	연락처	비고
1						미성년세대원 / 성년세대원
2						미성년세대원 / 성년세대원
3						미성년세대원 / 성년세대원
4						미성년세대원 / 성년세대원
5						미성년세대원 / 성년세대원
6						미성년세대원 / 성년세대원
7						미성년세대원 / 성년세대원
8						미성년세대원 / 성년세대원

3. 위임내용

상기의 개별 위임자 본인은 아이엠뱅크 서울영업부의 마포 에피트 어바닉 중도금대출 신청업무 中 국토교통부 주택보유수 조회를 위한 제반 자필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.

20 년 월 일

- 위임장은 차주의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작성 [직계존속, 직계비속]
[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+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[등본상 직계비속 포함]]
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
- 도장은 개인인감으로 날인 [인감증명서 상 도장]
- 첨부서류
 대리인(채무자)의 실명증표
 주민등록등본 /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포함
 (위임자가 미성년 세대원인 경우) 미성년세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(일반)
 (위임자가 미성년 세대원인 경우) 미성년세대 기준 각각의 기본증명서(상세)
 (위임자가 성년 세대원인 경우) 성년 세대원 각각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[서명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]

※ 미성년세대란? 만 19세미만

※ 세대란?

주민등록표상 본인 및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),
 직계비속(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포함)
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확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확인.
 배우자 및 배우자 세대내 직계비속의 위임장등 작성필요

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샘플



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별지 제 2호서식)

문서확인번호 : 4771-1015-7023-0690

※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

본인서명사실확인서

성명 (한자)	()	서명	
주민등록 번호			
주소			
용도	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	<input type="checkbox"/> 소유권 이전 (매매, 증여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제한물권 설정 (근저당권 설정, 전세권 설정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그 밖의 용도 (가등기 설정, 가등기 말소 등)	
	그 외의 용도	거래상대방 (매수자)	성명(법인명) <input type="text" value="빈란"/> 주소 <input type="text" value="빈란"/>
		주인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<input type="text" value="빈란"/>
위임받은 사람	성명 <input type="text" value="빈란"/>	주소(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) <input type="text" value="빈란"/>	
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			
발급 신청자			(서명)
비고			
발급번호 No. 00000033	수수료	600 원	
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.			2020년 1월 13일

아이엠뱅크 서울영업부의 마포 에피트 어바닉 중도금 대출 신청업무에 제반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수 조화를 위한 일체의 행위
수임인 : (대리인 성함, 대리인 주민등록번호)

0047	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
600원 2020.1.13	
<p>1. 본인서명사실확인서(본서식)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(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,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(영장발행시)로 기재)를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.</p> <p>2.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,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,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</p> <p>3. 용도란[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(법인명), 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, 주소를 포함합니다] 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,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,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</p> <p>4.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거래상대방란은 거래상대방이 "국가"나 "지방자치단체", "국제기구"와 "외국정부", "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" 제4조에 따른 법인·단체 또는 기관(공사·공단 등), "지방공기업법"에 따른 "지방공사" 및 "지방공단", 「금융위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새마을금고(중앙회 포함) 등 은행, 보험회사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란에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.</p> <p>5. 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.[예시:대출보증용, 선박등기용(매수인의 성명등), 법인등기용, 공탁금 수령용, 보관금 수령용 등].</p> <p>6.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른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. 다만, 변호사,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(예시: ○○○ 법무사)</p> <p>7. 발급 이후에 용도,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, 이 확인서를 위조·변조하는 경우에는 「형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p> <p>8.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.</p> <p>9.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300원을 받습니다.</p>	

210mm × 297mm(특수용지 80g/m²)